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59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3. 20.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6. 3. 20.
다. 상 정 의 결 일 자 : 2006. 3. 29. 총무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개정이유

- 가. 2005.11.15. 제1종박물관 등록으로 인하여 고성공룡박물관으로 명칭변경 필요
나.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우수한 박물관자료의 수집방법을 명문화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박물관 개관 및 휴관일을 조례에 명문화(안 제6조)
다. 유아 입장료 징수(안 제8조)
라. 운영위원회 운영사항 보강(안 제15조)
마. 전시물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보강(안 제16조)
바. 전시물의 대여하거나 받을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21조)
사. 영상실의 운영 사항 신설(안 제2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공룡박물관은 2005년 11월 15일자로 제1종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정식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현행 「고성군 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명을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 박물관 휴관일을 명확히 규정함과 아울러 박물관 입장료를 고성군립공원 관리조례에 따르던 입장료 규정을 본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어린이의 기준을 7세이상에서 3세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15조에 운영위원회운영사항 보강, 안 제16조에 전시물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보강, 안 제21조에 전시물을 대여하거나 받을 수 있는 조항 신설, 안 제23조에 영상실의 운영사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안입니다.
- 따라서 고성공룡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조례 개정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입장료 징수 대상 연령을 7세에서 3세로 대폭 낮추는 등의 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질의 및 답변

- 문 : 전시물의 망실·훼손·도난 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손해보험은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하고 보험가입이 곤란한 제외대상을 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 답 :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향후 조례개정 조치하겠습니다.
- 문 : 영상관 유료화는 박물관 입장료 납부후 입장한 관람객에게 이중적 징구는 아닌가?
- 답 : 이용료가 필요한 영상물 상영 등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함입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6. 3.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